

14-하-2. 시설 안전관리 현황

■ 공시지침

【공시기관】: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공시시기】: 2024년 10월

【공시방법】: 간접입력(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시내용】: 시설 안전관리 현황

【공시양식】: 다음 양식 적용(자료기준일: (시설 안전관리 담당 부서) 2024. 4. 30., (건물 안전관리) 2023. 5. 1. ~ 2024. 4. 30., (실행계획, 지진 안전관리) 2023. 12. 31., (소방 안전관리) 2023학년도)

(단위: 동, 건, 회, 명, %)

(1) 시설 안전관리 담당 부서명 (팀명칭)	(2) 실행계획 유무 (O/X)	(3)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 실적										
		시설 안전점검 현황			최초 40년 도래 건물 정밀안전점검 현황 (단위: 동, %)							
		건명	점검기간	대상 건물 수	최초 40년 도래 정밀안전점검 대상 건물 수	정밀안전점검 건물 건물 수						

(3)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 실적							(4) 지진 안전관리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단위: 동)							D·E등급 건물 해소 실적(단위: 동)			지진 안전 관리 대상 건물 수	내진성능 확보 현황			
구분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E등급 (불량)	계	대상 건물 수	해소 건물 수	해소 비율 (%)		내진 설계 건물 수	내진성능 확인 건물 수	내진보강 완료 건물 수	내진성능 확보율 (%)
40년 이상														
40년 미만														
계														

(5) 소방 안전관리			
화재 발생 건수 (단위: 건)	기숙사 (소방)교육·훈련 (단위: 회, 명)		
	입사 현원	교육훈련 횟수	1회당 참여 인원

■ 작성지침

- 시설 안전관리 담당 부서명(팀명칭)(기준일: 2024. 4. 30.): 부서명을 기재하고 하단 괄호 안에 팀의 명칭을 기재
(예: 시설관리과(안전팀), 총무과(시설팀), 교무과(시설팀) 등)
- 실행계획 유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현황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건물 안전점검과 점검결과 등급 및 위험시설 해소 실적

【시설 안전점검 현황】: 2023. 5. 1. ~ 2024. 4. 30. 기간 중에 교육시설(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3건

작성(3건 이상인 경우 3건, 3건 미만인 경우 모두), 대상건물 수를 각 점검시기별 작성
※ 시설 안전점검 실시 시작일이 2023. 5. 1. ~ 2024. 4. 30. 기간 중에 있다면 연계

예시	시설 안전점검	
	건명	점검기간
	여름철 안전점검	'23.06.01.~06.30.
	겨울철 안전점검	'23.11.01.~11.30.
	해빙기 안전점검	'24.02.26.~03.27.

【최초 40년 도래 건물 정밀안전점검 현황】: 2024. 4. 30. 기준으로 40년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작성

※ 점검대상 시설: 건축물 준공일자 또는 자체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4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교사시설, 체육관, 강당, 기숙사, 급식실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2024. 4. 30. 기준으로 최종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한 등급으로 작성

- ※ 40년 이상 건축물과 40년 미만 건축물로 구분하되, 건물 동수(동)로 작성
-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 결과 등급 기준 적용(점검 등급이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는 경우 양호=A 또는 B, 보통=C, 불량=D 또는 E)
- ※ 교육부 소속 국립대학,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D·E등급은 교육부 교육시설 구조안전위원회 심의 의결된 경우만 공시
- ※ 타 부처 국립대학 및 법인의 경우, D·E 또는 불량 등급은 각 소관부처에서 최종 심의가 완료된 등급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을 입력
- ※ 사립대 및 기타대학의 경우, D·E등급 또는 불량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을 입력
- ※ 자체 정기점검에서 D·E등급 또는 불량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이나 부처 최종심의를 완료되지 않은 경우 C 등급으로 공시
- ※ 안전점검 결과 등급 기준

등급	상태	평가(조치)기준
A등급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이상이 없는 시설
B등급 (양호)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등급 (보통)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 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등급 (미흡)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 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E등급 (불량)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적절한 시기에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 보다 철거, 재기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개축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D·E등급 건물 해소실적】: 2023. 5. 1. ~ 2024. 4. 30. 기준으로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인 건물에 대해 작성

※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E등급인 건물 수와 일치 하도록 작성

※ 해소 건물 수는 2024. 4. 30.까지 철거하거나 보수하여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또는 철거, 보수, 완료 등으로 없어진 경우만 해당

(4) 지진 안전관리(자료기준일: 2023. 12. 31.)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수】: 교육시설(건물) 중 「건축법」 제48조제2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확인 대상 건물 수

※ 일부만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은 제외

【내진설계 건물 수】: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 수

【내진성능 확인 건물 수】: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내진성능 있음이 확인된 건물 수

【내진보강 완료 건물 수】: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중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한 건물 수

【내진성능 확보율】: (내진설계 건물 수 + 내진성능 확인 건물 수 + 내진보강 완료 건물 수) / 지진 안전관리 대상 건물 수 × 100(%)

(5) 소방 안전관리(자료기준일: 2023학년도)

【화재발생건수】: 대학 내 시설물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으로 소방서 출동 기록이 있는 화재를 대상으로 하되, 자체 진화하고 청소만으로 해결된 경미한 화재는 제외

【기숙사 소방 교육·훈련】: 재학생이 소방훈련과 교육에 참여한 실적으로, 자체 보관(2년)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작성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참고로 작성

【입사현원】: 기숙사에 입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소방 교육훈련 해당일의 입사 학생 현원과 일치하도록 작성

【1회당 참여인원】: 소방교육·훈련 참여 연 인원 / 교육·훈련 횟수

■ 참고사항

- 시설 안전관리 현황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